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5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김기웅 · 서천호
엄태영 · 이성권 · 김기현
구자근 · 강선영 · 진종오
이종배 · 조정태 · 박덕흠
권영진 · 윤영석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고,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,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

제34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3항 전단 중 “보호위원회”를 “보호위원회, 경찰관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· 신고) ① · ② (생 략)	제34조(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· 신고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
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 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, 유 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을 지체 없이 <u>보호위원회</u>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 방지,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 술을 지원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호위원회, 경찰</u> <u>관서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